

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사자 복무처리 방안’ 안내

□ 배경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를 ‘경계’로 상향함에 따라,
-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‘복무처리 방안’을 안내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예방과 확산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2제1항
-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상 - 463호(2020. 1. 31.)
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무처리 안내”

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복무처리’ 안내

■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복무처리 방안’ ■

◆ 종사자가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, 치료·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‘유급병가’로 처리 ...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가능

- 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: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
- ②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: 1일 8시간,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‘병가’에 불포함 가능

※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료·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